

의안번호	2205473
의 퇴 인	강민국 의원
회 답 일	2024.11.29.
추 계 번호	24E4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밸류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액 한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 (공제액 추정 사유) 투자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공제세액 추정	-
2	안 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밸류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3년 간 9%로 분리 과세 - (공제 대상) 해당 증권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 (공제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 - (공제액 추정 사유) 투자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공제세액 추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0조의35(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0조의36(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밸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①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한편 ② 5천만원 이하 투자자의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9%)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금액 규모,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투자자에 한정된 배당소득금액(투자일부터 3년 이내 발생한 경우)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